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30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안전사고 유발, 범죄 장소 제공,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빈집 매입
 -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청년중심 지역 활력 거점 조성
 - 청년중심 창업 공간 및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조성

다. 출자의 필요성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빈집매입은 2019년도 예산편성 : 244,032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이동호(☎2133 - 7257)

□ SH공사 출자금 지원

- 서울시내 빈집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4천호 임대주택 건립

○ 연도별 매입계획 및 출자금 금액

구분	출 자 금				
	계	'19	'20	'21	'22
빈집 매입(필지)	1,000	400	200	200	200
임대주택 매입(호수)	4,000	100	1,000	1,200	1,700
총사업비	918,510	244,392	201,126	216,846	256,146
출자금		244,032			

○ 세부산출금액

단위사업	구분	계	'18	'19	'20	'21	'22
빈집 매입	합계	918,510	0	244,392	201,126	216,846	256,146
	소 계	611,970		244,392	122,526	122,526	122,526
	사무관리비	390		360	10	10	10
	빈집매입 (철거포함)	600,000		240,000	120,000	120,000	120,000
	감정평가비	5,000		2,000	1,000	1,000	1,000
	중개보조	2,400		960	480	480	480
	인지세 등	180		72	36	36	36
	공기관등	4,000		1,000	1,000	1,000	1,000
임대 주택	소계	306,540			78,600	94,320	133,620
	국비	193,050			49,500	59,400	84,150
	시비	113,490			29,100	34,920	49,470